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이하 탄소중립 기본법)」 제29조(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)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 요

- 「탄소중립 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필요
 -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이행점검,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을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로 지정 가능
-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는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 수립 지원·컨설팅, 사업시행 및 운영·관리,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, 사업 활성화 정책 발굴 등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사업을 지원

2. 신청 자격

-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해당하는 기관
 -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 -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 -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- 「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」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 -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 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
 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
 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- 환경부 공모를 통해 이미 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,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기구로 지정한 기관은 부처 간 공동 지정한 것으로 봄

3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가. 신청 방법 :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

나.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
※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, 필히 접수 여부 확인 요망

다. 신청 기간 : 2023. 1. 18.(수)~2023.1.31.(화) 18:00까지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

4. 신청기관 제출서류

가.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, 지정신청서 요약 1부(「붙임1」양식)

나. 신청자격 증명서류(법인 등기부등본 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 28조제7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
다. 지정제안서(요약서 포함) 10부

* 지정제안서는 한글(*.hwp)로 편집하며, 본문은 50P, 요약서는 20P 이내

라. 탄소중립 추진 관련 연구·사업수행 등 실적자료(해당 있을 시)

마. 지정제안서 및 평가항목과 관련한 참고·증빙자료

바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(해당 있을 시)

야. 제출서류 1식 전산파일 (usb 제출)

5. 평가기준

가. 신청기관 일반현황(조직, 시설, 예산 등) 및 업무 연관성

나. 전담조직·시설과 전문인력 확보(구성계획) 여부

다. 탄소중립도시 관련 연구·사업실적 등 전문성

라. 탄소중립도시 업무 추진의지 및 기대효과

6. 평가방법

가.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(결격사유 확인, 필요서류 구비 여부 등)를 통해 (서면)평가 대상 기관 선정

나. 내·외부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평균 85점 이상(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점 제외)인 경우 지원기구로 지정

다. 지원기관 지정 사실은 관보 게재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,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통지

7. 신청 시 유의사항

- 가. '법인 등기부등본'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
- 나.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은 '원본대조필'을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
- 다.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또는 FAX 신청은 받지 않으며, 제출한 서류(증빙자료 포함)는 반환하지 않음
- 라. 서류미비, 허위 및 오류기재,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이의제기 불가함
- 마. 지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·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바. 지원기관 지정과 관련한 추천서 제출, 유력인사의 소개 등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, 해당기관은 지정평가 탈락 처리

8. 안내 및 문의처

-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안연진 사무관 (☎044-201-3710)
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지겸 주무관 (☎044-201-3719)

<붙임1>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신청서 및 요약

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
신청인	명 칭	
	대 표 자	법인등록번호
	소 재 지	
	전 화 번 호	
	설립 근거	
	설립 목적	
	설립 연월일	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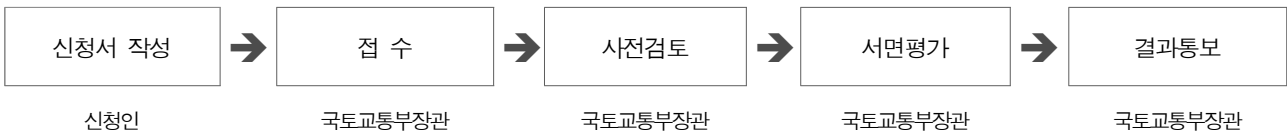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기관명 (직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 등기부등본 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각 호 해당여부 증빙자료 2.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요약 3. 지정제안서(요약서 포함) 4. 기타 증빙·참고자료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 절차



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신청 요약

① 기관 개요	기관명	0000	대표자	0000	설립일	0000		
	설립근거법	민법, 개별법 등	운영현황	직원수 (명) 지사 (개소) 매출액 (억)	회사성격	공공기관 출연기관 등		
	설립목적 및 업무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목적 : · 주요업무 : 						
② 전담 조직 (계획)	명칭	상근인력 (명)	연간예산(백만원)		시설 보유 현황 (장비명, 대수 등 기재)			
③ 전문 인력 (계획)	NO	직위	성명	근무기간(년)	전문분야	전문분야경력	자격증 또는 학위	
	1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기관 근무기간 · or 채용예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야 및 학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력년수 		
	2							
	...							
	9							
	10							
④ 연구·사업실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탄소중립 관련 사업, 연구, 용역, 활동, 논문, R&D, 특허 · 신기술 보유여부 등 기재(연도별로 작성) 						
⑤ 차별화 전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 전문성, 운영체계, 업무 효율화 등 타기관과 차별화될 수 있는 신청기관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						
⑥ 기대효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원 기관의 지원기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						

〈붙임2〉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제안서 목차(예시)(50P이내 작성)

I. 기관소개 및 일반 현황

1. 주요업무
2. 조직 및 인원
3. 예산, 시설 현황

II. 신청기관 역량·전문성

1. 탄소중립도시 관련 전담조직 구성 여부 및 예산·시설 등 현황
2. 탄소중립도시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, 운영 계획
3. 탄소중립도시 관련 연구 및 사업 추진실적(현황)
4. 업무수행 차별화 전략

III. 맺음말

1. 지원기관 업무수행 특·장점
2. 수행의지 및 다짐

* 목차 구성은 위 예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가능하며 신청기관의 특성과 제안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, 본문은 50P, 요약서는 20P 초과 금지

〈붙임3〉 지원기구 평가 기준

평가 항목	세부 평가지표	배점
신청기관 일반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의 성격과 탄소중립도시 업무 연관성 · 탄소중립도시 관련 조직운영 현황 	20
탄소중립도시 관련 전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탄소중립 또는 도시정책·조성 관련 전문인력 보유여부 · 최근 5년 이내('17년 이후) 탄소중립도시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	50
사업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탄소중립도시 업무 수행을 위한 차별화 전략 · 탄소중립도시 업무에 대한 기관의 추진의지 · 신청기관의 탄소중립업무 지원기구 지정에 따른 기대·파급효과 	30